

처리기간

180일 이내

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의 경우)

※ "희생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제적부 등본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신청자의 고령(高齡)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부 등본으로도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①란: 등록기준지란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 당시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주소란에서는 부상사망자는 사망 당시 주소를 적고, 부상을 입은 현재 생존자는 현주소를 적습니다. ②란: 부상장해자의 사망 및 생존 중 하나에만 ‘√’표시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연월일을 적습니다. - 강제동원 일시는 부상장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 연월일을 적습니다. - 강제동원 지역은 부상장해자의 국외 동원지역을 적습니다. - 부상내용에는 강제동원으로 입은 부상의 경위, 부위 및 부상으로 인한 현재 장애정도(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③란: 피해증명방법은 강제동원 여부와 부상 관련 각각에 대하여 가능한 증명방법을 모두 ‘√’합니다. (중)에는 증거자료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예: 일본 국발행 확인서가 있는 경우 "1중"으로 적습니다). ④란: 부상장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아래와 같은 순위로 적습니다. -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적습니다. 1의 해당자가 없으면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를 적습니다. 1, 2의 해당자가 없으면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손녀를 적습니다. 1, 2, 3의 해당자가 없으면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를 적습니다. ⑤란: 생존자는 본인이 신청인이 되고 사망한 경우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란에 적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를 적어 첨부합니다. ⑦란: 신청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